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991
----------	------

제안년월일 : 2021년 12월 1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1년 10월 15일 김경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280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10월 15일 박기재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287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10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의안번호 2807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취약계층의 심신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사업의 활성화를 고려해 취약계층의 정의를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단체·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의안번호 2878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시장이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현재 기시행중인 유기동물의 입양사업에 대한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4조 및 제26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을 “내버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맹견”이란”을 ““맹견”이란 사람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따라 등록된”을 “따른”으로, “또는 인식표”를 “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동물보호업무의 지원)”을“(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을“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으로,“영업자”를“영업자,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시장”을“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시장”을“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 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자치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  
-----  
-- 영업자,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  
---

<삭제>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시장 또는 구청장-----  
-----  
-----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 -----  
-----  
-----.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견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